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3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 강득구·이상식·문정복

김준혁 • 이개호 • 송재봉

민병덕 · 이학영 · 이기헌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의무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사업주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근로자의 성별 및 신체 특징에 따라 착용이 가능한 보호구의 크기 등이 다름에도 현행 시행규칙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 호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여성 또는 체구가 작은 근로자 등 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도록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 전단 중 "제41조까지"를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40조의2(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선 왕 <u><신 설></u>	제40조의2(보호구의 지급)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 신체 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특례)
제29조, 제38조부터 <u>제41조까</u> <u>지</u>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 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 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	<u>제40조까</u> 지, 제40조의2, 제41조

다.	\circ	경우	"사	접주	"는	"현	장
실싙	늘산 º	업체의	장'	'스토	<u>=</u> , '	'근호	<u>.</u> "
는	"현	장실습	"으로	<u>-</u> , "	근로	자"	는
"혀	장실	습생"	으로	본대	7.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u>제41조제2항</u>(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 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 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 ·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 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 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과 같음)
4
1. •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2(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2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